

본회의 주요 처리법안

◎ 정무위원회

연번	안 건	주 요 내 용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p>□ 입법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p>□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을 대량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거래계획을 거래기간의 개시일 전 30일 이상 90일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거래계획을 보고하려는 자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시가총액의 1만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또는 주요주주 등의 갑작스러운 특정증권등의 대규모 거래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함으로써 일반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방위원회

연번	안 건	주 요 내 용
1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수정, 김진표의원 대표발의)	<p>□ 입법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환경의 대내외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군의 과학군·기술군화가 중요한 시점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인구절벽에 따른 50만 병력자원 유지 어려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탈 피오트 제도를 도입하여 창의성 풍부한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교육-군복무-취업·창업 연계를 도모 - 첨단 과학기술 軍 도약을 위한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방과학기술 양성기관 설립 필요 ○ 방산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체계적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방산의 지속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조기 발굴,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국방과학기술 인력 투자는 국방력 강화 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임 <p>□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의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첨 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운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 졸업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우수인재를 조기에 선발하여 교육 - 교육과정은 다른 사관학교의 입법례와 동일하게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교육과정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사 졸업자는 육·해·공군의 소위, 석사 졸업자는 중위로 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 졸업자는 6년간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함 - 석사 이상의 경우 이수기간만큼 추가로 의무복무하되 시행령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의 책무로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생의 교육 역량 강화 및 장기복무 지원 등을 위해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복무 후 전역자에 대해서는 취업지원·창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연번	안 건	주 요 내 용
		<p>○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법 시행 전에 과학기술사관학교 지정, 교육과정 공동 운영 등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p> <p>□ 기대효과</p> <p>○ 우리 군의 과학군·기술군화의 침범 역할을 할 동량(棟樑)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운영 중인 유사 제도들이 일종의 대체복무 제도로 변질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선진사례인 탈피오트 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창의성 있는 우수인재를 조기에 선발하여 우리 군에서 중장기 복무하게 하여 국방 역량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을 활용한 민간 산업 선도 가능 <p>* 이미 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된 학사과정 학생을 선발하거나, 의무복무가 7년 이상으로 지나치게 긴 문제점들이 지적</p> <p>○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K-탈피오트 제도 추진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수진, 설비 및 시설, 군의 훈련장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추가 예산 소요를 최소화하면서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가능

◎ 보건복지위원회

연번	안 건	주 요 내 용
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봉민·이명수·이정문의원 대표발의)	<p>□ 입법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만성질환과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높아진 인식 등으로 치과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치과 의료기기 시장 규모도 급성장하고 있음. 또한,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세계 각국의 치의학 의료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치과용 신재료 및 기기 개발, 새로운 치료법 개발 및 실용화 등을 위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p>□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로 치의학 관련 연구개발·기술진흥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정책의 수립 지원,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지원 등을 규정함.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의 고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치과의료 수요를 충족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치의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견인
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서정숙·강병원의원 대표발의)	<p>□ 입법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국 개설 장소 분양 및 임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가 내 병·의원 입점 여부나 규모 등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켜 병·의원이 약국에 불법적으로 입점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에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예정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지원금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연번	안 건	주 요 내 용
		<p>□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 예정자까지로 확대하여 적용함. ○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함.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의료현장의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p>□ 입법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국 개설 장소 분양 및 임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가 내 병·의원 입점 여부나 규모 등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켜 병·의원이 약국에 불법적으로 입점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에는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지원금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p>□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처방전의 알선 등을 목적으로 약국개설자로부터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의료법」에 규정함.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의료현장의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환경노동위원회

연번	안 건	주 요 내 용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p>□ 입법배경</p> <p>○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의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미이행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며,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경영실적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경기 불확실성의 장기화로 양질의 청년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공공기관 효율화 등으로 인하여 공공부문 채용 감축 등 안정적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안정적인 청년 고용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p> <p>□ 주요내용</p> <p>○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p> <p>□ 기대효과</p> <p>○ 공공부문의 청년고용 확대 및 청년실업률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p>